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3.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2월 2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2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3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추진감)

- 가. 개정이유
 - 주차장법·영·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함.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함(안 제15조제2항)
 - ※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종류구분에 있어 근린공공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통합됨.
 -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화물자동차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4항 등)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단위에 관한 규정(최초단위 30분, 추가단위 10분)인 제13조를 삭제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본 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의 용어통일과 미비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라고 한 내용을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개정하고 다만을 신설하여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8조

제6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이며, 제2항의 내용중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을 별표1에 의거 부과하던 것을 제2항 1~9호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로 부과한다고 하는 내용과 제2항 1호~9호까지의 내용중 제5호의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를 제8조제4항의 규정(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에 의거 가산금을 적용하고,

제3조(주차거부 금지)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근거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 제17조제2항 및 법 19조의3제2항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므로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고 보아지며 같은 조 제6호와 제7호를 삭제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제4조(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제2항의 주차장(노상, 노외)위탁관리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이상의 금액을 위탁 관리 수수료로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공개경쟁 입찰 위탁자 선정 경우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고 한 안이며,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제4항 중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시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단서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의 삭제는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제1항에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징수는 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받는 것으로 한 규정을 조례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안이며, 제3항의 내용중 주차장 등급인 3, 4급지를 개정안에는 4, 5급지로 하향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13조(주차시간단위)를 삭제하는 것은 민영주차장 운영자에게 적용되던 규정 사항으로 종전에 신고제에 의하여 주차장 운영을 하였으나 개정법(12조)이 통보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제14조(주차장의 표시)제2항 중 공영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규정과 제3항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에 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제1항은 주차장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제2항은 법 제 20조제2항에 근거한 규정을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위임된 사항으로 용어를 정리하였다고 보아지며,

제22조(음자의 대상) 제1항제1호의 관련근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했던 것을 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주차장설치신고제를 통보제로 개정하고, 제2호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한 자로서가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가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음자의 방법)제1항과 제26조(보조의 방법)의 내용 중 기존의 조례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이를 규칙이 정하는 이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표1의 1호에서 11호 중 제8호의 내용중 할인을 할인과 할증 등으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있어서 안내표지판의 (구분에서 민영주차장을 삭제하고 색채에서 바탕과 글씨에서 청색, 흰색을)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8호에 할인을 할인과 할증 등으로, 별표 제1호 서식의 구분에서 민영주차장을 포함했던 것을 삭제하고 색채에서도 청색과 흰색을 삭제하고 녹색바탕에 흰색글씨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4조제2항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관리 수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징수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수탁자에게 교부한다라고 하였는데 징수납부금에 대하여 정확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집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영·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함.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함(안 제15조제2항)

※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종류구분에 있어 근린공공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통합됨.

나.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을 화물자동차로 한정하고 화물자동차도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하역주차구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되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4항 등)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단위에 관한 규정(최초단위 30분, 추가단위 10분)인 제13조를 삭제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 주차장법

·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붙임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의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 가산금은 제1항의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을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제3조 본문중 “법 제10조의2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6호 및 제7호는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5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3·4급지”를 “4·5급지”로 한다.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 13조를 삭제한다.

제 14조제 1항 중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 상단에”를 “그 표지 상단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0조제 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5조제 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2항 중 “법 제 20조제 2항 또는 제 3항”을 “시행규칙 제 6조제 5항”으로 하고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제 22조제 1항제 1호중 “법제 12조제 2항”을 법 제 12조제 1항”으로 “신고”를 “통보”로 하고 동조 동항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제 23조제 1항중 “구청장이 따로”를 “규칙이”로 한다.

제 26조제 1항내지 제 2항중 “구청장 따로”를 “규칙이”로 한다.

[별표 1] 비고 8호중 “할인”을 “할인·할증 등”으로 한다.

별지 제 1호 서식의 비고중 민영주차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 9조 제 2항 및 제 14조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신 설>	②법 제 9조의제 3항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 가산금은 제 1항의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제 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 <u>노외주차장</u> 다만 <u>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대</u> <u>하여는 제 8조제 6항에 의한다.</u> ②..... <u>노상주차장</u> <u>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u> <u>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u>

현행	개정안
<p>1.~4. (생략) 5. <u>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u> 6.~8. (생략)</p> <p>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 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1.~5. (생략) 6. <u>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u> 7. <u>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u></p> <p>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②<u>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u></p> <p>제8조(하역주차구간) ①~③(생략) ④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p> <p>⑤<u>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u></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u>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u></p>	<p>1.~4. (현행과 같음) 5. <u>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u> 6.~8. (현행과 같음)</p> <p>제3조(주차거부 금지)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p> <p>1.~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p> <p>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u>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u></p> <p>제8조(하역주차구간) ①~③(현행과 같음) ④.....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제></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u>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사용하게 하는</u></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③공영주차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 화물의 운송사업용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3·4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3조(주차시간단위)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 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계산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4·5급지.....</p> <p><삭제></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u>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u>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 상단에 영등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차량 등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u></p> <p>②(생략)</p> <p>③<신설></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u>공영노외주차장</u>.....<u>그 표지 상단에</u>.....<u><삭제></u>.....</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u>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u>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u></p> <p>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u>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u></p>	<p>제15조 ①<삭제></p> <p>②<u>시행규칙 제6조제5항</u>.....<u>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u>.....</p>
<p>제22조(이용자의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이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2조(이용자의 대상) ①.....</p>

현 행	개 정 안																							
<p>1. <u>법 제12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를 설치한 자.</p> <p>2. <u>법 제19조의3의 규정</u>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p> <p>3. (생략)</p> <p>제23조(용자의 방법) ①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u>구청장이 따로</u>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제26조(보조의 방법) 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u>구청장이 따로</u>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u>구청장이 따로</u>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7. (생략) 8. 주차요금의 <u>할인</u>에 따라 100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1. (생략)</p> <p>[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그림 생략) - 비고 -</p>	<p>1. <u>법 제12조제1항</u><u>통보</u>.....</p> <p>2. <u>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u></p> <p>3. (현행과 같음)</p> <p>제23조(용자의 방법) ①.....<u>규칙이</u>.....</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26조(보조의 방법) ①.....<u>규칙이</u>.....</p> <p>②.....<u>규칙이</u>.....</p>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7. (현행과 같음) 8.<u>할인·할증 등</u>.....</p> <p>9.~11.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 비고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재료</th> <th colspan="2">색채</th> </tr> <tr> <th>바탕</th> <th>글씨 (고딕)</th> </tr> </thead> <tbody> <tr> <td>공영주차장</td> <td rowspan="2">알루미늄 또는 철 판</td> <td>녹색</td> <td>흰색</td> </tr> <tr> <td>민영주차장</td> <td>청색</td> <td>흰색</td> </tr> </tbody> </table>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 (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또는 철 판	녹색	흰색	민영주차장	청색	흰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재료</th> <th colspan="2">색채</th> </tr> <tr> <th>바탕</th> <th>글씨 (고딕)</th> </tr> </thead> <tbody> <tr> <td>공 영 주차장</td> <td>알루미늄 또는 철 판</td> <td>녹색</td> <td>흰색</td> </tr> </tbody> </table>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 (고딕)	공 영 주차장	알루미늄 또는 철 판	녹색	흰색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 (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또는 철 판	녹색	흰색																					
민영주차장		청색	흰색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 (고딕)																					
공 영 주차장	알루미늄 또는 철 판	녹색	흰색																					